

# 보령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1010호 2022. 12. 20.(화)

## 조례

○ 제1878호 :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3
○ 제1879호 :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제1880호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
○ 제1881호 :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제1882호 :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제1883호 :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제1884호 :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제1885호 :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제1886호 :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제1887호 :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 제1888호 :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37
○ 제1889호 :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40
○ 제1890호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43
○ 제1891호 :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5

회							
람							

## 규 칙

- 제684호 :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 · 운영 조례 시행규칙 ..... 46
- 제685호 :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 ..... 51

## 예 규

- 제57호 : 보령시 각종 행사 참석기준에 관한 지침 폐지지침 ..... 52

## 고 시

- 제2022-387호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 53
- 제2022-390호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 54
- 제2022-391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55
- 제2022-392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57
- 제2022-393호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 58
- 제2022-390호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 ..... 59

## 공 고

- 제2022-2070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재공고 ..... 60
- 제2022-2073호 :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 67
- 제2022-2085호 :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 68
- 제2022-2086호 :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 69
- 제2022-2088호 : 보령시 도시계획시설(웅천 소로2-69)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70
- 제2022-2089호 : 도로의 지정 · 공고 ..... 72
- 제2022-2090호 : 도로의 지정 · 공고(변경) ..... 73
- 제2022-2117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 74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장 7.20.20  
보령시장



보령시 조례 제1878호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체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년마다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

학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제13조에 따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 조례」에 따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시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체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차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7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체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차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 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례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견을 거친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에서 수립한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평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첨부 결과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령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보령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 그 밖에 보령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제20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임선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임선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정·부서장으로 하고, 임선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 ④ 임기 3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협력) 시장은 위원회를 해촉(解屬)할 수 있다.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屬)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로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적이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계적이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부  
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장 *김동익* 

보령시 조례 제1879호

###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나라사랑스피치대회

제6조 중 「보령시포상조례」를 「보령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보령시 조례 제1880호

와 제30조에 따라 보령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치파 직무범위를 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단장 등의 직급)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직급과 실, 과, 직속기관의 과의 사무 분장을 구직으로 정한다.

## 제2장 시본청

제3조(국의 설치)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국·경제도시국·행정지원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조하기 위해 기획감사실·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제5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국에 신산업전략과·에너지과·세마을공동체과·미의협력과·해양정책과·관광과·수산과·해수욕장경영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미래 발전전략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성장동력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4. 해양부이오·미드·해양치유·해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신산업 발굴, 그린에너지 육성 및 개발, 석탄박물관, 폐광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역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보령해양미드박람회, 섬 비엔날레 개최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민관 협치, 갈등 관리 및 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도감독 전반에 관한 사항
9.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마을 만들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간 섭외·교류·협력 중진에 관한 사항
1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14. 중앙부처, 도 소관 예산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정부·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해양개발종합추진,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
17. 도서·해양관광개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8. 관광진흥·개발·축제에 관한 사항
19. 수산진흥 및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0. 어항개발, 어촌뉴딜, 어촌신활يك증진에 관한 사항
21.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및 종합운영 관리
22.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시유지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경제도시국에 지역경제과·신속허가과·건축과·건설과·도시과·도로과·교통과·수도과·산림공원과·토

## 지정보과를 둔다.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토지유치, 기업·공업유치, 하이페스지원, 균로자종합복  
지관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 주택, 주거급여, 건축민원, 개발행위,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농지, 농어촌뉴타운 건설, 하천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개발·재생, 도시 디자인, 가로등에 관한 사항
5. 도로,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사업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령읍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산림경영·보호, 산림휴양·재해,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9. 토지정책, 지적관리, 지적정보, 세주소, 지적제조사에 관한 사항
10.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각종 사업 설계·공사감독·준공·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체육진흥과·문화교육과·복지정책과·가족지원과·경로장애인과·  
열린민원과·사무과·회계과·환경보호과를 둔다.

-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사, 조직, 선거, 기록물관리, 의전, 북무, 후생복지, 행정혁신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 관리와 복구, 민방위,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3. 체육지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4. 종합경기장, 대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관리 운영 및 업장료, 사용료 등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항
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8. 경로·여성·아동·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9. 민원, 여권, 가족관계등록, 청원, 정보공개,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11.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사무 총괄,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정책·대기환경·지도관리·청소·수질·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다른 국, 지속기반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약자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합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센터의 위치는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에 둔다.
- ③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합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

###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掌한다.

1. 농업, 축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2. 농촌 지도사업의 종합 기획 수립·조정
3.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4. 농업인 교육 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
5. 농축산물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 및 정부양곡에 관한 사항
6. 축산행정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 개선,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식량자물 경쟁력 강화
10. 토양, 비료, 병·해충 예찰 및 농업 환경 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11.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지도 및 기술개발
12.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존 등 「농지법」에 관한 사항 총괄
13. 귀농귀촌, 농촌관광, 농촌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같다.

제15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합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반 조직운영 등 관할 구역 내 행정전반의 사무를 수행한다.

### 제5장 읍·면·동 및 면출장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을 두며, 법 제128조에 따라 오천면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 따른 읍·면·동 및 면출장소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읍·면·동장 등) ①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동장 등 ② 면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합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면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합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①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掌한다.

② 면출장소는 도서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면의 사무 중 일부

를 관장한다.

##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0조(정원의 총수) 보령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45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119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26명

제21조(정원체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체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직급별 정원체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 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체정국장”을 “행정자원국장”으로 “사회복지”를 “가족지원”으로 한다.

②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체정국장”을 “행정자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체생”을 “도시”로 한다.

③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중 “안전체정국장”을 각각 “행정자원국장”으로 한다.

④ 보령시 교통안전정책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체생”을 “도시”로 한다.

⑤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체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행정자원국장, 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체정국장”을 “행정자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를 각각 “체육체육”으로 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⑦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을 “행정지원국장,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 ⑧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재생”을 “도시”로 한다.

- ⑨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도시재생”을 “도시”로 한다.

- ⑩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⑪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해양수산관광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 ⑫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 중 “문화재마을”을 각각 “문화교류”로 한다.

- ⑬ 보령시 미소·친절·청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제7조제5항 중 “문화재마을”을 “세미을공동체”로 “세미을팀장”을 “세마을자치팀장”으로 한다.
- ⑭ 보령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마을”을 “문화교육”으로 “도시재생”을 “도시”로 한다.
- ⑮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지적”을 “열린민원”로 한다.

- ⑯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회복지”를 “가족지원”으로 “도시재생”을 “도시”로 한다.

- ⑰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⑱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사회복

- 지”를 “가족지원”으로 한다.
- ⑯ 보령시 세입 징수표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형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⑰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제21조제3항 중 “교육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문화교육과장, 가족지원과장”으로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 ⑱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⑲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⑳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㉑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를 각각 “가족지원으로 한다.”
- ㉒ 보령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

- 다.
- ㉓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0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을  
“미래전략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를 “가  
족지원”으로 한다.
- ㉔ 보령시 육아환경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재생”을 각각 “도시”로  
한다.
- ㉕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을 “미래전략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㉖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 ㉗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 청수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행정  
지원국장, 청수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㉘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미래 전략국장, 대외 협력과장”으로 한다.

⑤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미래 전략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세마을공동체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교육체육”을 “체육전통”으로 “문화체육”을 “문화교육”으로 “주민생활지원”을 “복지정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세마을공동체과장

2. 기금출납원: 인구청년정책팀장

⑦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행정지원국장

⑧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전략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

⑨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5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보령시 지역자율봉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가족지원과장

### 5. 복지정책과장

### 6. 간접법관과장

⑫ 보령시 지역자조사회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4항제2호가목 중 “안전행정국장, 민원지적 과장, 도시재생과장”을 각각 “경제도시국장, 도시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 ④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7조제3항 중 “안전체육기금”을 “체육기금”으로 한다.
- 제7조제4항 제1호 및 제12조제1항 제1호 중 “교육체육”을 각각 “체육전”으로 한다.
- 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1호 중 “안전체육기금”을 “체육기금”으로 한다.
- ⑥ 보령시 토성 이자협 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제2호 중 “안전체육기금”을 “체육기금”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⑦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호 나목 중 “안전체육기금”을 “체육기금”으로 한다.
- ⑧ 보령시 통합체육안전회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제1호 중 “안전체육기금”을 “체육기금”으로 한다.
- ⑨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안전체육기금”을 “체육기금”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 중 “교육체육”을 각각 “문화교육”으로 한다.
- ⑩ 보령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중 “안전체육기금”을 “체육기금”으로, “체육기금”을 “미래체육기금”으로 한다.
- ⑪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9조제4항 제3호 중 “안전체육기금”,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을 “미래체육기금”,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으로 한다.
- ⑫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각 호 의 부분 중 “안전체육기금”을 “체육기금”으로 한다.
- ⑬ 보령시 청 척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3조제1호 및 제10조제3항 제1호 중 “안전체육기금”을 각각 “체육기금”으로 한다.
- 제3조제2호 및 제10조제3항 제1호 중 “교육체육”을 각각 “체육전”으로 한다.
- ⑭ 보령미드 천국협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전단 중 “문화세마을”을 “문화교육”로 한다.
- ⑮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문화세마을”을 “문화교육”로 한다.

- ⑤ 보령시 만서보령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미을”을 “문화·교육”로 한다.
- ⑥ 보령시 만서보령문화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문화재미을”을 “문화·교육”로 한다.
- ⑦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6항 후단 중 “문화재미을”을 “문화·교육”로 한다.
- ⑧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8조 중 “문화재미을”을 각각 “문화교육”로 한다.
- ⑨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교육체육과장, 문화재미을과장”을 “세미을공동체과장,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 ⑩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문화재미을”을 “문화·교육”로 한다.
- ⑪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1호 중 “건축허가”를 “건축”로 한다.
- ⑫ 보령시 부동산기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민원지적”을 “토지정보”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건축허가”를 “신속허가”로 한다.
- ⑬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제3항·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보령시 보건소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	보령시 일원
보령시 보건소 응천지소	보령시 응천읍 충서로 959-4	응천읍
주포지소	보령시 주포면 철재로 47-10	주포면
주교지소	보령시 주교면 울계로길 374	주교면
오천지소	보령시 오천면 소성안길 9	오천면
천북지소	보령시 천북면 흥포로 462	천북면
청소지소	보령시 청소면 평촌3길 27	청소면
청리지소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222-14	청라면
주산지소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389-6	주산면
미산지소	보령시 미산면 내평봉성길 5	미산면
성주지소	보령시 성주면 심원재길 6-15	성주면
보령시 보건진료소	보령시 오천면 오천중상로 276	교체1, 오포1·2·3, 갈현1
원산도 보건진료소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180	원산도
삼지도 보건진료소	보령시 오천면 삼지도1길 123	삼지도
의연도 보건진료소	보령시 보령시 오천면 의연도2길 14	의연도
효자동 보건진료소	보령시 오천면 효자동길 22-9	효자동
장고도 보건진료소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1길 53-3	장고도
고대도 보건진료소	보령시 오천면 고대2길 46-10	고대도
녹도 보건진료소	보령시 오천면 녹도길 69	녹도
호도 보건진료소	보령시 오천면 호도길 70-7	호도
학성 보건진료소	보령시 천북면 학성현길 13	학성1·2·3·4길
장은 보건진료소	보령시 천북면 흥포로 751-2	장은1·2·3·4·궁포1·사호1·장현1·2·황룡1·2·신산리
장현 보건진료소	보령시 청리면 오서간길 44	월전, 양기, 양정, 신홍리
양기 보건진료소	보령시 남포면 병목길 17	삼현1·2·제석1·2
삼현 보건진료소	보령시 남포면 삼현2길 18-16	황교1·2·독산, 소황, 주철2
황교 보건진료소	보령시 웅천읍 두산로 550-8	신천2, 유곡1·2·중선1·2·3
수국 보건진료소	보령시 주산면 신구유곡로 205	봉상, 은현, 육현1·2·도통
봉성 보건진료소	보령시 미산면 봉성길 131	

[별표 2]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제3항·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북부지구지소	보령시 청소면 청소로길 167	주포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중부지구지소	보령시 대천남로 60-1	주교면, 청라면, 성주면, 마천1~5동
남부지구지소	보령시 웅천읍 청터길 30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별표 3]

출장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제2항·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원산출장소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376	원산도, 시루섬, 효자도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청기준(제21조제1항·관련)

구분	일 반 적	별정적·정무적
비율	99% 이상	1% 이내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21조제3항 관련)

## 1. 일반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7%	27%	31%	25%	10%	8%

## 2.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지 도	직
비율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3% 이내	97%	9%	90% 이상

##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6급 상당	비고
비율	100%	

\* 참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 정원 관리기 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2조 관련)

(단위: 명)

기 관	총 정원	총 정원(전체)	총 정원(전체)	총 정원(전체)	총 정원(전체)
총 계	1,145				
정무직 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1,105				
3급	1	1			
4급	6(1)	3	1	2(1)	
5급	55	31	2	5	1
6급 이하 소계	1,041	-			
전문경력관 소계	2	-			
별정직 계	1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지도직 계	33	-			
지도관	2		2		
지도사	31	-			

\* 소괄호 안에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수를 뜻함.

[별표 7] 삭제

### 한시정원의 직급 및 윤용시 한(제22조 관련)

관리 기관별	소속부서	제작부서	제작자	제작일		제작내용	제작내용	제작내용	제작내용	제작내용	제작내용
				제작일	제작시간						
총계	9			2022년 12월 31일까지	'19.9.30. 개정 반영						
박람회지원단	일반직	5급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개	8									
	5급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남체전준비단	일반직	6급	2	2022년 12월 31일까지							
	7급	3		2022년 12월 31일까지							
	8급	2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장 7/2 등



보령시 조례 제1881호

###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국내”를 “국내·외”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장 7/2 등



보령시 조례 제1882호

##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탁의 임기) 위촉위탁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조례 제1883호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로, “결정·고시하여

야”를 “결정·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결정·고시하고자 하는”을 “결정·고시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수령하여야”를 “수령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제3조 중 “한하여”를 “환경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영향지역 주민에 배포”을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으로, “주민지원 기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폐기물처리수수료에 100분의 10”을 “수수료에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용으로 인한”을 “운용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지원 금액”을 “기금”으로, “향상 및 복리증진”을 “증 대 및 복리증진·육영사업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여야”를 “용도로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금으로 조성된”을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기금”으로, “법 위 안”을 “법 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주민자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제8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마을발전기금 및 지역단체 지원기금
2. 해충 체거 및 방역 약품 공급
3. 마을별 공동시설운영비(장애인방비, 전기요금, 통신료 등)
4. 그 밖에 시장과 주민자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⑦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전제품 구입비(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가정 내 환경개선 을 위한 제품)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과 주민자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의2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부서장

나. 예산 및 기금을 총괄하는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

나. 제10조에 따른 주민자원협의체 위원 3명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 시설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주민자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8조의4(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며, 전년도 기금운용계획 실의 및 기금 사용의 결산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제3항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업무 담당과장”을 “청소환경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환경팀장”을 “청소환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2조제1항”으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를 “주민의 지원에”로, “주민 지원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인이내로”를 “12명 이내로 하며”, “로, “구성한다”를 “구성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주민으로서 의회”를 “지역주민으로, 시의회”로, “6인이내”를 “9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는 전문대학이상”을 “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으로, “연구원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써”를 “연구원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를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거쳐”를 “거쳐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회를 스스로 사퇴를”을 “위원회 스스로 사임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3”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제8항 중 “직권 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⑩ 지원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 소환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금 사용 증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또는 복리증진과 관련된 계획, 조사,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 보수, 운영업무를 포함 할 수 있다.

[별표] <삭제>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5조 관련)

구 분	지 원 사 업
1. 소득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축산업시설의 설치</li> <li>○ 상·공업시설의 설치</li> <li>○ 관광산업시설의 설치</li> <li>○ 기타 소득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2. 복리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시설의 설치</li> <li>○ 도로시설의 설치</li> <li>○ 상·하수도의 설치</li> <li>○ 교육·문화시설의 설치</li> <li>○ 환경·위생시설의 설치</li> <li>○ 운동·오락시설의 설치</li> <li>○ 교육기자재 또는 학자금·장학금지급</li> <li>○ 기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ul>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조례 제1884호

###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1조 제3항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을 "지정된"으로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로 한다.
- 제15조 제5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 제17조 제1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공원 또는"을 "따른·공원 또는"으로, "의한·공원을"을 "따른·공원을"로 한다.
- 별표 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6번 항목에 "투명페트병"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다.
- 별표 6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내 연락처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7 매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사양 내 연락처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12 생활폐기물 관리 체의구역에 원산도1·2·3리를 삭제한다.
- 제8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않는 범위에서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 제10조 제1항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장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시장이 정하는"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착 후 배출하여야"를 "부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배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이 지정하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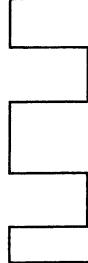
## 재활용기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안 제2조 관련)

종 류	품 목	비 출 요 령
1. 종이류	1.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포장지 -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 표지, 국체의 스프링 등은 재거함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끌어 있는 태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윤번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마주, 소주병은 수퍼에 팔수 있음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웃, 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 류, 전선, 알루미늄, 석쇠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통투에 넣거나 그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 합성수지용기	- 일반기정용
5. 플라스틱류	- 생활용품류 - 페스티로폼
	-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용기류 세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안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 등을 진체물을 안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기전체품포장·합성수지제질안전·강립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95.8.5))에 의하여 제조자등에게 강령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
6. 투명페트병	- 무색투명한 억는 색 물 음료수 냉장나마자 PET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7. 기타	- 현 의류 등 - 재활용기능토록 절지 않게 비닐봉투등에 담아 배출

[별표 6] <개정 2022. 12. 20.>  
쓰레기봉투의 제작사 양(안 제14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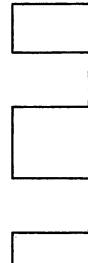
(음식물용)



이 봉투를 뮤기 위한 부분입니다.

## 1. 일반구격봉투

(일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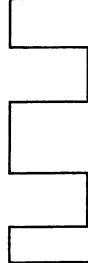
이 봉투를 뮤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쓰레기봉투 (20L)  
= 일 반 용 =

1. 차량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뮤는 후 수거가 편리한 장소에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와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전화 : 930 - 3678)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지

(음식물용)



이 봉투를 뮤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쓰레기봉투 (20L)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 =

1. 음식물류폐기기는 농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류폐기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뮤는 후 수거가 편리한 장소에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와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 봉투와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이 봉투와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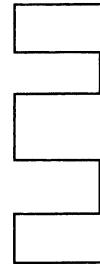
연락처 :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전화 : 930 - 3678)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지

2. 특수구직봉투

3. 공공용봉투

[별표 7] <개정 2022. 12. 20.>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쓰레기봉투 (50L)

= 특수구직봉투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일반쓰레기에 대비해 소형의 생활폐기물을 담아 봄은후 수거가 험화한 장소에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와 다른 봉투들을 사용하여 쓰레기 봉투를 바릴 경우에는 100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행 시장

연락처 : 보행시장 환경보호과  
(전화 : 930 - 367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지

\* 각 용량별 봉투는 제11조(3항)에 의거 제작  
\* 광고문 박스는 봉투 앞면 양쪽을 이용한다.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사양(안 제14조 관련)

제1010호

시 H

2022. 12. 20 (화)

보험 제 호	제 허가기록 처리 스티커		
금 원권			
<input type="checkbox"/> 폐기물종류 : <input type="checkbox"/> 배출자성명 : <input type="checkbox"/> 배출일자 :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배출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input type="checkbox"/> 배출 천·반드시 배출장소·시간·등을 처리업체에 협력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업체명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대천2동·대천3동 일부 대천천 기준 북쪽   <input type="checkbox"/> 업체명 용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청주면 대천3동 일부 대천천 기준 남쪽 대천4동·대천5동         </div>			
<input type="checkbox"/> 배출일시에 대형폐기물을 상단에 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 주십시오.			

보행 시장

연락처 : 보행시장 환경보호과  
(전화 : 930 - 367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지

종 류	마 릉 삭	글 자 삭	크 기	비 고
1,000원권	원 삭	검 청 삭	120mm×12mm	
3,000원권	초 농 삭	"	"	
5,000원권	하 늘 삭	"	"	

[별표 12] &lt;개정 2022. 12. 20.&gt;

##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안 제2조제4호 관련)

번 호	제외구역	설명
개	8개 토(里)	
오천면	효지도1.2리, 삼지도1.2.3리, 녹도1.2리, 외연도리	

[참고사항] 위 표에서 규정한 도서지역에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 또는 해저터널이 설치되어 통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생활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조례 제1885호

###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

32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체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체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부 칙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근로자’이란”을 “‘근로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단체”이란”을 “단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7.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조례 제1886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풀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의”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흠폐이지”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흡폐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보령시주차장조례」”를 “「보령시 주차장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령시 소유”를 “시 소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흡폐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6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청년상인 육성사업

6. 화제 예방 접점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제21조제2항 본문 중 “보령시”를 “시”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풀목형상점가 지정) ① 보령시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구역을 풀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풀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총족해야 한다.

1. 2천 체급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③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끌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끌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 ④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끌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끌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끌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불여 보령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등의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등의(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등의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명부

- 제26조(끌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보령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끌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끌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끌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끌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글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제

■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일	2022. 12. 20
신청인	이상민
전화번호	010-1234-5678

## 글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호

상점가 번호	상점가 명	면적		면적/점포수
		면적(m <sup>2</sup> )	점포수	
1	보령시	100	5	
2	보령시	80	4	
3	보령시	60	3	
4	보령시	40	2	
5	보령시	20	1	
6	보령시	10	1	
7	보령시	5	1	
8	보령시	3	1	
9	보령시	2	1	
10	보령시	1	1	
11	보령시	1	1	
12	보령시	1	1	
13	보령시	1	1	
14	보령시	1	1	
15	보령시	1	1	
16	보령시	1	1	
17	보령시	1	1	
18	보령시	1	1	
19	보령시	1	1	
20	보령시	1	1	
21	보령시	1	1	
22	보령시	1	1	
23	보령시	1	1	
24	보령시	1	1	
25	보령시	1	1	
26	보령시	1	1	
27	보령시	1	1	
28	보령시	1	1	
29	보령시	1	1	
30	보령시	1	1	
31	보령시	1	1	
32	보령시	1	1	
33	보령시	1	1	
34	보령시	1	1	
35	보령시	1	1	
36	보령시	1	1	
37	보령시	1	1	
38	보령시	1	1	
39	보령시	1	1	
40	보령시	1	1	
41	보령시	1	1	
42	보령시	1	1	
43	보령시	1	1	
44	보령시	1	1	
45	보령시	1	1	
46	보령시	1	1	
47	보령시	1	1	
48	보령시	1	1	
49	보령시	1	1	
50	보령시	1	1	
51	보령시	1	1	
52	보령시	1	1	
53	보령시	1	1	
54	보령시	1	1	
55	보령시	1	1	
56	보령시	1	1	
57	보령시	1	1	
58	보령시	1	1	
59	보령시	1	1	
60	보령시	1	1	
61	보령시	1	1	
62	보령시	1	1	
63	보령시	1	1	
64	보령시	1	1	
65	보령시	1	1	
66	보령시	1	1	
67	보령시	1	1	
68	보령시	1	1	
69	보령시	1	1	
70	보령시	1	1	
71	보령시	1	1	
72	보령시	1	1	
73	보령시	1	1	
74	보령시	1	1	
75	보령시	1	1	
76	보령시	1	1	
77	보령시	1	1	
78	보령시	1	1	
79	보령시	1	1	
80	보령시	1	1	
81	보령시	1	1	
82	보령시	1	1	
83	보령시	1	1	
84	보령시	1	1	
85	보령시	1	1	
86	보령시	1	1	
87	보령시	1	1	
88	보령시	1	1	
89	보령시	1	1	
90	보령시	1	1	
91	보령시	1	1	
92	보령시	1	1	
93	보령시	1	1	
94	보령시	1	1	
95	보령시	1	1	
96	보령시	1	1	
97	보령시	1	1	
98	보령시	1	1	
99	보령시	1	1	
100	보령시	1	1	
101	보령시	1	1	
102	보령시	1	1	
103	보령시	1	1	
104	보령시	1	1	
105	보령시	1	1	
106	보령시	1	1	
107	보령시	1	1	
108	보령시	1	1	
109	보령시	1	1	
110	보령시	1	1	
111	보령시	1	1	
112	보령시	1	1	
113	보령시	1	1	
114	보령시	1	1	
115	보령시	1	1	
116	보령시	1	1	
117	보령시	1	1	
118	보령시	1	1	
119	보령시	1	1	
120	보령시	1	1	
121	보령시	1	1	
122	보령시	1	1	
123	보령시	1	1	
124	보령시	1	1	
125	보령시	1	1	
126	보령시	1	1	
127	보령시	1	1	
128	보령시	1	1	
129	보령시	1	1	
130	보령시	1	1	
131	보령시	1	1	
132	보령시	1	1	
133	보령시	1	1	
134	보령시	1	1	
135	보령시	1	1	
136	보령시	1	1	
137	보령시	1	1	
138	보령시	1	1	
139	보령시	1	1	
140	보령시	1	1	
141	보령시	1	1	
142	보령시	1	1	
143	보령시	1	1	
144	보령시	1	1	
145	보령시	1	1	
146	보령시	1	1	
147	보령시	1	1	
148	보령시	1	1	
149	보령시	1	1	
150	보령시	1	1	
151	보령시	1	1	
152	보령시	1	1	
153	보령시	1	1	
154	보령시	1	1	
155	보령시	1	1	
156	보령시	1	1	
157	보령시	1	1	
158	보령시	1	1	
159	보령시	1	1	
160	보령시	1	1	
161	보령시	1	1	
162	보령시	1	1	
163	보령시	1	1	
164	보령시	1	1	
165	보령시	1	1	
166	보령시	1	1	
167	보령시	1	1	
168	보령시	1	1	
169	보령시	1	1	
170	보령시	1	1	
171	보령시	1	1	
172	보령시	1	1	
173	보령시	1	1	
174	보령시	1	1	
175	보령시	1	1	
176	보령시	1	1	
177	보령시	1	1	
178	보령시	1	1	
179	보령시	1	1	
180	보령시	1	1	
181	보령시	1	1	
182	보령시	1	1	
183	보령시	1	1	
184	보령시	1	1	
185	보령시	1	1	
186	보령시	1	1	
187	보령시	1	1	
188	보령시	1	1	
189	보령시	1	1	
190	보령시	1	1	
191	보령시	1	1	
192	보령시	1	1	
193	보령시	1	1	
194	보령시	1	1	
195	보령시	1	1	
196	보령시	1	1	
197	보령시	1	1	
198	보령시	1	1	
199	보령시	1	1	
200	보령시	1	1	
201	보령시	1	1	
202	보령시	1	1	
203	보령시	1	1	
204	보령시	1	1	
205	보령시	1	1	
206	보령시	1	1	
207	보령시	1	1	
208	보령시	1	1	
209	보령시	1	1	
210	보령시	1	1	
211	보령시	1	1	
212	보령시	1	1	
213	보령시	1	1	
214	보령시	1	1	
215	보령시	1	1	
216	보령시	1	1	
217	보령시	1	1	
218	보령시	1	1	
219	보령시	1	1	
220	보령시	1	1	
221	보령시	1	1	
222	보령시	1	1	
223	보령시	1	1	
224	보령시	1	1	
225	보령시	1	1	
226	보령시	1	1	
227	보령시	1	1	
228	보령시	1	1	
229	보령시	1	1	
230	보령시	1	1	
231	보령시	1	1	
232	보령시	1	1	
233	보령시	1	1	
234	보령시	1	1	
235	보령시	1	1	
236	보령시	1	1	
237	보령시	1	1	
238	보령시	1	1	
239	보령시	1	1	
240	보령시	1	1	
241	보령시	1	1	
242	보령시	1	1	
243	보령시	1	1	
244	보령시	1	1	
245	보령시	1	1	
246	보령시	1	1	
247	보령시	1	1	
248	보령시	1	1	
249	보령시	1	1	
250	보령시	1	1	
251	보령시	1	1	
252	보령시	1	1	
253	보령시	1	1	
254	보령시	1	1	
255	보령시	1	1	
256	보령시	1	1	
257	보령시	1	1	
258	보령시	1	1	
259	보령시	1	1	
260	보령시	1	1	
261	보령시	1	1	
262	보령시	1	1	
263	보령시	1	1	
264	보령시	1	1	
265	보령시	1	1	
266	보령시	1	1	
267	보령시	1	1	
268	보령시	1	1	
269	보령시	1	1	
270	보령시	1	1	
271	보령시	1	1	
272	보령시	1	1	
273	보령시	1	1	
274	보령시	1	1	
275	보령시	1	1	
276	보령시	1	1	
277	보령시	1	1	
278	보령시	1	1	
279	보령시	1	1	
280	보령시	1	1	
281	보령시	1	1	
282	보령시	1	1	
283	보령시	1	1	
284	보령시	1	1	
285	보령시	1	1	
286	보령시	1	1	
287	보령시	1	1	
288	보령시	1	1	
289	보령시	1	1	
290	보령시	1	1	
291	보령시	1	1	
292	보령시	1	1	
293	보령시	1	1	
294	보령시	1	1	
295	보령시	1	1	
296	보령시	1	1	
297	보령시	1	1	
298	보령시	1	1	
299	보령시	1	1	
300	보령시	1	1	
301	보령시	1	1	
302	보령시	1	1	
303	보령시	1	1	
304	보령시	1	1	
305	보령시	1	1	
306	보령시	1	1	
307	보령시	1	1	
308	보령시	1	1	
309	보령시	1	1	
310	보령시	1	1	
311	보령시	1	1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선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조례 제1887호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선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선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안여객선 이용 시 선주민이 기상여건으로”를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선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일 생활권”이란 선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선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선의 범위를 말한다.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조례 제1888호

###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해상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시 관광해상택시”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으로서 보령시청(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항구역) 해상택시의 운항구역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해상 일원으로 한다.

제4조(운항시간) ① 해상택시의 운항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치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운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해상택시의 운항 횟수 및 노선별 운항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않을 수 있다.  
 1. 풍랑(風浪), 태풍, 강풍 또는 해무(海霧) 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운항하기에 위험한 경우  
 2. 그 밖에 해상택시 정기검사 및 선체의 고장 등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아니할 정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항노선 및 이용료) ① 해상택시의 운항노선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립,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4세 이하의 영유아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감면사항 중 감면율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이용료의 10퍼센트 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2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혜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

- 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첨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첨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

#### 증 2세환자

- 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④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

택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인화물·질이나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경우
4. 해상택시 관리자의 청탁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 그 밖에 해상택시의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관리위탁) 시장은 해상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매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해상택시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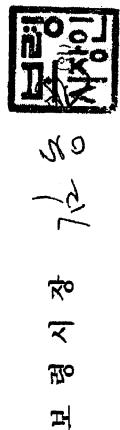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정별 상탁시 유통노선 및 이용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A 노선	원산도→장고도→고래도→삽시도 →불모도→원산도	40,000	
B 노선	원산도→소도→추도→허육도→육도→ 약세섬→월도→송도→몽택도→원산도	25,000	
기타	원산도↔불모도 원산도↔증도(시루섬) 원산도↔원산도 해상낚시터	35,000 13,000 10,000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조례 제1889호

###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머드체험시설 운영과 천연선 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보령머드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령머드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보령시 고장  
2길 55에 둔다.

제3조(시설) 테마파크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동
    - 가. 전시, 홍보관
    - 나. 키즈카페
    - 다. 머드상품샵
    - 라. 스파 및 테라피 시설
    - 마. 그 밖의 체험동 운영 관련 시설
  2. 천연선동
    - 가. 카페, 편의점
    - 나. 천연선풀
    - 다. 회의실
    - 라. 사무실
- 제4조(사업) 테마파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머드체험, 스파, 테라피 사업 및 흥보 사업
  2.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 제5조(사용허가 등) ① 제3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

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시장에게 수탁시설의 청산 보고를 해야 하며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외 및 전시회의 개최 또는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조사·점사하거나 충보·마케팅·행사유치, 협동계획 및 성과 등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관)

(단위: 원)

구 분	면적 (m <sup>2</sup> )	사 용 료(부가세 별도)				총 사용료 (시간당) (종 일)
		09:00 ~ 12:00 (오 전)	13:00 ~ 17:00 (오 후)	18:00 ~ 21:00 (야간)	09:00 ~ 17:00 (전 일)	
컨 벤션홀	867	997,000	1,310,000	936,000	2,080,000	2,226,000 3,037,000 303,000
회의실-1	77	86,000	116,000	83,000	184,000	197,000 269,000 27,000
회의실-2	62	69,000	93,000	66,000	148,000	159,000 217,000 22,000
회의실-3	118	133,000	178,000	127,000	283,000	303,000 413,000 41,000
회의실-4	109	122,000	164,000	117,000	261,000	279,000 381,000 38,000
회의실-5	116	130,000	175,000	125,000	278,000	297,000 406,000 41,000
회의실-6	111	125,000	167,000	119,000	269,000	285,000 388,000 39,000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조례 제1890호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 시민이 탈모로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0대 이하”란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 “탈모 치료비 지원”이라 치료비를 위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의료 지원 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40대 이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의 방향
2.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세부 지원 방안
3. 그 밖에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한 40대 이하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40대 이하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현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제6조에 따른 텔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현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텔모 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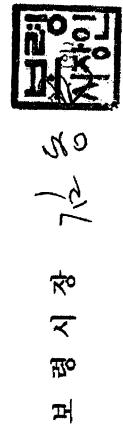
#### 부 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의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조례 제1891호

###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  
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

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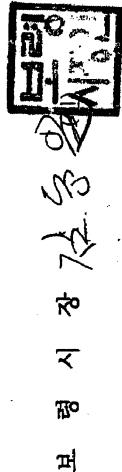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령마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규칙 제684호

## 보령마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마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sup>1</sup>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보령마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령마드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

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테마파크 관리·운영주체의 책임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허기를 받은 자의 책임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각종 서식)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에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부 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소 (사업장소지)	성명 (대표자)	사업자(법정)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사업자(법정)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처리기간 7일
	상호	종목	영문약칭	
개최행사 행사내용	한글	한글	영문	
	영문	영문	영문	
사용기간	준비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행사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변경내역	철거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컨벤션홀 회의실1 회의실2 회의실3 회의실4 회의실5 회의실6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사용장소	사용장소	기타		
변경사유				

「보령마드 빼미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기타)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구하

날짜  
년 월 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소 (사무소소재)	성명 (대표자)	사업자(법정)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사업자(법정)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처리기간 7일
	상호	주소 (사무소소재)	주소 (사무소소재)	
개최행사 영문	한글	한글	영문약칭	
	영문	영문	영문	
사용기간	준비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행사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변경내역	철거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컨벤션홀 회의실1 회의실2 회의실3 회의실4 회의실5 회의실6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변경사유				

「보령마드 빼미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구하

날짜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 보령미드 테마파크 사용허가 통보서

보령미드 테마파크 사용허가 통보서			
신청자 주 소 (주민소소재지)	성 명 (대표자) 상 호 (FAX)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 )
개최행사 기	한글 영문	영문약칭	
사용기간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전면선출 회의설1	회의설2
사용장소 행사내용 사용허가(불가)	회의실	회의설4	회의설5
불가사유	기타		
사 용 료	입 금 처	운행명 및 체크번호	예금주

「보령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통보합니다.  
※ 감면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보령시장장(인)**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자 주 소 (주민소소재지)	성 명 (대표자) 상 호 (FAX) ( )		
개최행사 기	한글 영문		
사용기간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사용장소 행사내용 사용허가(불가)	회의실		
불가사유	기타		
사 용 료	입 금 처	운행명 및 체크번호	예금주

「보령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 감면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보령시장장(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감면 결정 통보서

신 청 자	성 명 (내 표지)	시 영(개별인) 등록 번호
	상 호	전화 번호 (FAX) ( )
	주 소 (사무소 소재지)	
개척 험사	한 글	영문 약칭
	영 문	
사용 기간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사-용-장-소

가면극대(의)

/감면비율(%)

감면사유

212

七  
四  
七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통보합니다.

ପାତ୍ର

보령시장(인)

「보령머드 허미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보령시장 귀하

[별표 1]

### 사용료 감면기준(제3조 관련)

구분	감면기준
「보령마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감면</li> </ul>
「보령마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감면</li> </ul>

[별표 2]

### 사용료 환급기준(제4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li> <li>◦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li> <li>◦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li> <li>◦ 사용 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li> </ul>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li> <li>◦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li> <li>◦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li> <li>◦ 사용 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li> </ul>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환급</li> </ul>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 행 규 칙 전부개정규칙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 규칙 제685호

###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제공무원의 관리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  
계관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분임장수관: 농업정책과장
2.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물품관리관: 농업정책과장
4. 물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5. 지출원: 급식지원팀장
6. 수입금출납원: 농정팀장
7. 세입세출와 현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보령시 각종 행사 참석기준에 관한 지침 기준 폐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장 7/26



보령시 예규 제57호

### 보령시 각종 행사 참석기준에 관한 지침 폐지지침

보령시 각종 행사 참석기준에 관한 지침을 폐지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고시 제2022-387호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12. 12.

보령시



###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로2길 17 (명천동) 등 6건

건축물 소재지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부여 사유
보령시 명천동 1153	보령시 명천로2길 17	2022. 12. 12.	2종근생 신축
웅천읍 관당리 69-25	웅천읍 갓골1길 8-34		단독주택 신축
웅천읍 관당리 366	웅천읍 간드리큰길 45		교육연구시설 신축
웅천읍 죽청리 149-23 외 2필지	웅천읍 무창포로 349		단독주택 신축
웅천읍 노천리 483-1 외 1필지	웅천읍 독산로 109-58		축사 신축
남포면 봉덕리 468-17	남포면 고루머리길 34-8		단독주택 신축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0149)에 문의 또는 보령시 누리집 및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2.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하고,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보령시 고시 제2022-390호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12. 13.

보 령 시



###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동죽1로 36-9 (죽정동) 등 7건

건축물 소재지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부여 사유
보령시 죽정동 418-6	보령시 동죽1로 36-9	2022. 12. 13.	사무소 신축
옹천읍 노천리 485-2	옹천읍 독산로 109-52		축사 신축
오천면 원산도리 730-1	오천면 원산도3길 107-27		단독주택 신축
천북면 장은리 316	천북면 무시점길 8-20		단독주택 신축
천북면 신죽리 641-8	천북면 말마지길 88-6		단독주택 신축
남포면 제석리 140	남포면 봉덕삼현길 307-239		단독주택 신축
성주면 개화리 383-1	성주면 성주산로 795		기존 농장 관리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0149)에 문의 또는 보령시 누리집 및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2.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하고,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보령시 고시 제2022-391호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보령시 동대동 319-34번지 일원의 「동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보령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보령시 동대동 319-34번지 일원(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사업의 명칭: 동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명	결정규모	사업규모(금회)	비고
동대2공원 ⑪	A=9,921m <sup>2</sup>	A=9,921m <sup>2</sup>	전체개설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보령시장(산림공원과장)
- 주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마.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19. 1. 18. ~ 2022. 12. 31.
- 변경: 2019. 1. 18. ~ 2026. 1. 1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없음): 불임1

아. 관계도서는 보령시청 도시재생과(041-930-386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 불임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조서

시

부

제1010회

2022. 12. 20 (화)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동·리	가번			성명	주소	성별	주소	관리의종류 및내용
1	보령시	동태동	319	16	파	11.0	11.0	보령시		
2	보령시	동태동	319	31	대	1,021.0	1,021.0	보령시		
3	보령시	동태동	319	32	파	1,268.0	1,268.0	보령시		
4	보령시	동태동	319	33	전	377.0	377.0	김선일	충남 보령시 동태동 773	
5	보령시	동태동	319	34	전	1,121.0	1,121.0	보령시		
6	보령시	동태동	319	93	전	813.0	813.0	보령시		
7	보령시	동태동	319	98	전	39.0	39.0	보령시		
8	보령시	동태동	319	104	전	169.0	169.0	보령시		
9	보령시	동태동	319	106	대	324.0	324.0	김용길	보령시 명천동 동태주공3차아파트 120-309	
10	보령시	동태동	319	158	임	299.0	299.0	김용길	보령시 명천동 동태주공3차아파트 120-309	
11	보령시	동태동	319	170	대	786.0	786.0	보령시		
12	보령시	동태동	319	209	파	411.0	411.0	보령시		
13	보령시	동태동	319	222	전	684.0	684.0	보령시		
14	보령시	동태동	319	224	임	83.0	83.0	보령시		
15	보령시	동태동	319	225	임	70.0	70.0	보령시		
16	보령시	동태동	349	1	대	504.0	504.0	보령시		
17	보령시	동태동	349	23	파	1,536.0	1,536.0	보령시		
18	보령시	동태동	351	2	임	405.0	405.0	보령시		
합 계						9,921	9,921			

**보령시 고시 제2022-392호****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령시 동대동 1341번지 일원의 '희망스마트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보령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보령시 동대동 134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사업의 명칭: 희망스마트공원 리모델링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정규모	사업규모	비고
희망공원 (어린이공원 18)	A= 1,585.3m <sup>2</sup>	A= 1,585.3m <sup>2</sup>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보령시장(산림공원과장)
- 주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마.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보령	동대	1341	공	1,585.3	1,585.3	보령시				
	소 계				1,585.3	1,585.3					

사. 관계도서는 보령시청 도시재생과(041-930-386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보령시 고시 제2022-393호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12. 15.



###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로2길 35 (명천동) 등 5건

건축물 소재지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부여 사유
보령시 명천동 1177	보령시 명천로2길 35	2022. 12. 15.	다가구주택 신축
보령시 남곡동 485-11	보령시 칡살뫼길 41		단독주택 신축
오천면 원산도리 650-1	오천면 원산도3길 333		단독주택 신축
미산면 남심리 78-16	미산면 판미로 33-15		창고시설 신축
주산면 신구리 256	주산면 거북뫼길 6-15		단독주택 신축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0149)에 문의 또는 보령시 누리집 및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하고,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보령시 고시 제2022 - 394호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폐지 고시

건물 멀실이 확인되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권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16.

보 령 시



###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삼산농현길 129

건축물 소재지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폐지 사유
천북면 신죽리 129-1	천북면 삼산농현길 129	2022. 12. 16.	건물멸실 후 신축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041-930-3488)에 문의 또는 보령시 누리집 및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보령시 공고 제2022-2070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재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보령시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오천	리도	수고선	204	영보리 42-5	영보리 118-12	400	-	6.5	5	사업기간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오천204호(수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 보령시장

3. 사업 기간

- 당초: 2020. 6. 1. ~ 2021. 12. 31.
- 변경: 2020. 6. 1. ~ 2024. 12. 31.

4. 토지의 세목 : “불임1” 참조

\*첨부서류 : 관계서류는 다음과 같이 도로과(도로시설팀)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한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2. 노선지정도 및 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오천204호(수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변경 후		토지소유자		비고
					지번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67,726		6480			
1	오천면 영보리	42-5	도	49	42-5	1	보령시		
2	오천면 영보리	42-8	대	8	42-8	2	보령시		
3	오천면 영보리	698	도	1,746	698	264	국(국토교통부)		
4	오천면 영보리	42-4	도	9	42-4	9	보령시		
5	오천면 영보리	41-4	도	27	41-4	27	노영돈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6	오천면 영보리	41-1	답	991	41-8	43	노재일	보령시 오천면 솟제길 146-14	
7	오천면 영보리	31-1	도	119	31-1	119	노재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8	오천면 영보리	41-3	답	3,187	41-9	133	노재일	보령시 오천면 솟제길 146-14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오천204호(수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변경 후		토지소유자	비고
					지번	면적변적 (㎡)		
9	오천면 영보리	40-1	답	2,096	40-4	17	노재일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146-14
10	오천면 영보리	39	답	731	39-2	523	노재일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146-14
11	오천면 영보리	96-4	답	3,018	96-8	14	이길	미등기
12	오천면 영보리	96-3	답	1,406	96-7	27	이시형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146-12
13	오천면 영보리	96-2	답	1,003	96-6	77	이시형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146-12
14	오천면 영보리	96-1	답	1,606	96-5	33	이종억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7, 512동 2302호
15	오천면 영보리	749	구	15,709	749	1515	국(농림축산식품부)	
16	오천면 영보리	80-2	도	199	80-2	199	이종억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7, 512동 2302호
17	오천면 영보리	95-7	답	178	95-13	107	한국농어촌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오천204호(수고선)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변경 후			토지소유자	비고
					지번	편입면적 (㎡ )	성명 또는 명칭		
18	오천면 영보리	31-2	도	154	31-2	138	보령시		
19	오천면 영보리	31-3	전	40	31-3	36	보령시		
20	오천면 영보리	31	전	2,219	31-4	198	노재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21	오천면 영보리	39-1	도	16	39-1	16	노영든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22	오천면 영보리	32-3	도	26	32-3	26	노재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23	오천면 영보리	38-1	도	89	38-1	89	노학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24	오천면 영보리	38	답	347	38-2	47	노재일	보령시 오천면 솟제길 146-14	
25	오천면 영보리	37-2	전	929	37-3	247	최용한	충청남도 흥성군 흥성읍 문화로 72번길 92, 110동 405호	
26	오천면 영보리						최예환	경기도 광명시 도박로 56, 105동 405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오천204호(수고선)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변경 후		토지소유자		비고
					지번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7	오천면 영보리	80-4	전	516	80-4	516	보령시		
28	오천면 영보리	95-5	답	2,309	95-12	84	이종억		
29	오천면 영보리	95-4	답	650	95-11	23	이종억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7, 512동 2302호	
30	오천면 영보리	95-3	답	1,440	95-10	3	고동희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7, 512동 2302호	
31	오천면 영보리	81-4	도	110	81-4	110	조성우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2 64	
32	오천면 영보리	117-1	도	34	117-1	34	이종억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7, 512동 2302호	
33	오천면 영보리	116	도	74	116	74	이종억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7, 512동 2302호	
34	오천면 영보리	95-2	답	1,744	95-9	2	이시형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146-12	
35	오천면 영보리	95-1	답	1,544	95-8	184	이시형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146-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오천204호(수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변경 후		토지소유자		비고
					지번	면밀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6	오천면 영보리	751	도	925	751	110	국(농림축산식품부)		
37	오천면 영보리	94-2	답	225	94-2	225	한국농어촌공사		
38	오천면 영보리	94	답	910	94-3	32	윤세기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150	
39	오천면 영보리	77-6	답	600	77-16	87	노재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40	오천면 영보리	77-5	답	1,334	77-15	15	노재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41	오천면 영보리	80	전	331	80-6	43	이효희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14번길 9, 402동 705호	
42	오천면 영보리	117	답	1,165	117-3	77	이종억	경기도 파주시 기운로 67, 512동 2302호	
43	오천면 영보리	117-2	답	70	117-2	70	보령시		
44	오천면 영보리	118-2	답	362	118-12	284	이시형	보령시 오천면 솟재길 146-1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오천204호(수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변경 후		토지소유자	비고
					지번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45	오천면 영보리	118-8	도	54	118-8	54	노희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3
46	오천면 영보리	118-7	전	1,843	118-13	175	최용환	충청남도 충성군 흥성을 문화로 72번길 92, 110동 405호
47	오천면 영보리	120-3	답	63	120-3	63	보령시	
48	오천면 영보리	120-1	도	103	120-1	103	이종억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67, 512동 2302호
49	오천면 영보리	121	전	592	121-2	44	이재형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호령로 240, 108동 901호
50	오천면 영보리	121-1	도	99	121-3	9	최도경	미등기
51	오천면 영보리	산9-58	임	14,727	118-12	152	연안이씨총정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51, 105동 801호 추가 (종종대표 이신희)

공고 제2022-2073호

##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보령시장



점용자의 성명 주 소	에스케이텔레콤(주)
도로의종류	농어촌도로
노 선 명	리도207호(천북면)
점용의구분	도로점용허가
점 용 목 적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점 용 장 소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906번지
점 용 면적	[영구] A=1.0m <sup>2</sup>
점 용 기 간	2022-12-13 ~ 2031-12-31
점용물의종류	이동통신중계기(H=16.0m) 총 1본
공사실시의방법	인력 및 장비
공 사 기 간	2022-12-13 ~ 2023-12-31
도로의복구방법	원상복구
기 타 사 항	

보령시 공고 제2022-2085호

##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도로관리청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명	13호
점용의 목적	상수관로 매설 및 유량계실 설치	점용기간	2022-12-14 ~ 2031-12-31
점용의 장소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639-8번지 외 19필지	점용면적	[영구] A=62.77 m <sup>2</sup> , [일시] A=842.35 m <sup>2</sup>
점용물의 종류	상수관로매설 (L=560.1m)	공사기간	2022-12-14 ~ 2023-12-31
공사 방법	인력 및 장비	굴착 시 교통대책	교통표지판, 교통통제 시설물 설치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오픈굴착
점용자의 주소 · 성명	보령시장 (수도과장)	그 밖의 사항	허가번호 제2022-392호

공고 제2022-2086호

##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보령시장



점용자의 성명 주 소	보령시장(도로과장)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 선 명	리도210호(청라면)
점용의 구분	도로 점용허가
점 용 목 적	상수관로 매설 및 유량계 설치
점 용 장 소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886번지 외 26필지
점 용 면적	[영구] A=89.03m <sup>2</sup> , [일시] A=1,309.12m <sup>2</sup>
점 용 기 간	2022-12-14 ~ 2031-12-31
점용물의 종류	상수관로매설(L=1162.9m)
공사실시의 방법	인력 및 장비
공 사 기 간	2022-12-14 ~ 2023-12-31
도로의 복구 방법	원상복구
기 타 사 항	

## 보령시 공고 제2022-2088호

## 보령시 도시계획시설(응천 소로2-69)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보령시장

## 1. 단계별 집행계획

##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9	8	특수 도로	74	중로2-10	대창리 428-8	보행자 전용도로	-	22.10.31.	-

## 나. 사업 개요

도시계획 시설명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비고
소로 2-69	응천읍 주민쉼터 진출입로 개설	보령시장 (도로과)	2022년 ~ 2023년	보행자 전용도로 L=74m, B=8m	785	-

## 2.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시행	1단계			2단계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시비	785 (100%)	565 (72%)	70 (9%)	150 (19%)	-	-	-	-	

※ 2021년도 재원까지 기시행

## 3. 용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총 사업비		기시행		2022		2023		2024		이후 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785		565		70		150	-	-	-	-
부지매입 (m <sup>2</sup> )	645	635	462	565	183	70	-	-	-	-	-	-
도로 개설 (m)	74	150	-	-	-	-	74	150	-	-	-	-

※ 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도시재생과(☎ 041-930-3861),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로과(☎ 041-930-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공고 제 2022-2089호

## 도로의 지정 ·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4.

보 령 시 장

### □ 도로지정 현황

소재지	지번	지정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건축주	도로길이	도로너비	비고
웅천읍 독산리	283-27	23㎡	임	엘리스테이 (보령)	엘리스테이 (보령)	53.8m	5m	도로1
	283-34	40㎡	전	김0현	엘리스테이 (보령)			
	283-27	27㎡	임	엘리스테이 (보령)	엘리스테이 (보령)	31.5	5m	도로2

- 분할측량 시 도로지정 면적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041-930-3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공고 제2022-2090호

## 도로의 지정 · 공고(변경)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를 지정(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4.

보령시장

### □ 도로지정 현황

소재지	지번	지정면적	지목	토지소유자	건축주	도로길이	도로너비	비고
웅천읍 대창리	841-4	63.0㎡	도로	김0정	김0정	26.3m	2m	

- 분할측량 시 도로지정 면적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041-930-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공고 제2022-2117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완료되어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대한 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보령시장

###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내역

가. 위치: 충남 보령시 주포면, 청소면, 주교면 일원

나. 사용개시 연월일: 2022년 12월 20일

다. 사용개시 내용

#### 1)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명	위치	처리공법	시설용량	비고
주교 공공하수처리시설	보령시 주교면 울계큰길 286-9	고도처리공법 (DMR)	230m <sup>3</sup> /일	

#### 2) 하수관로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오수관로	D80mm	m	7,049.6	분류식
오수관로	D200mm	m	18,275.1	분류식
중계펌프장		개소	19	
배수설비	D300mm	가구	758	오수받이
자가펌프		개소	10	

라. 공공하수도 하수배제방식: 분류식

마. 배수구역: 주포배수분구-3,259ha(행정구역: 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바. 하수처리구역: 153.5ha(주교신설처리구역, 청소연계처리구역, 주포연계처리구역)

사. 하천수계: 서해

##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유입용량

- 가. 시설명: 주교하수처리서설
- 나. 처리공법: 고도처리(DMR)공법
- 다.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mg/ℓ)

구 분	BOD	COD	SS	T-N	T-P
설계유입수질	156.0	94.9	110.7	43.59	3.99
계획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0이하

라. 시설용량 : 일최대 230m<sup>3</sup>/일

## 3. 관련도면 열람

- 가. 기간: 2022. 12. 20. ~ 2023. 1. 3. 09:00~18:00(공휴일 제외)
- 나. 장소: 보령시청 수도과(하수도팀) ☎ 041-930-4147
- 다. 내용: 공공하수도 처리계통 도면 등

## 4. 기타사항

- 가.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 시설물 등의 관리자는 하수도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나.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 시설물 등의 관리자는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하수처리구역내 건축물 등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보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라.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및 오수관로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사용 중인 개인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폐쇄하고 오수를 오수관로에 직유입 할 수 있으며, 건축물 등의 건축시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수를 오수관로에 직유입 할 수 있습니다.

마. 오수관로의 위치 등 관련 세부도면 등은 보령시 수도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수도과 하수도팀(☎041-930-41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위치도

